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4. 18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- 관련법령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8조의 법률 폐지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에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보고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 종사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임명한날부터 1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임면사항을 보고하던 규제조항 폐지  
(안 제11조 제2항)

### 3. 관계법령

-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 28 조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2항을 삭제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종사자 임면)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기타 종사자는 원장 또는 수탁자가                     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.</p>	<p>제11조(종사자 임면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(삭제)</p>